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소 병 천**

차 례

- I. 서론
- II. 기후변화 관련 법제
- III. 화학물질 관련 법제
- IV. 기타 법제
- V.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전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역행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서명 철회 발표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에 일반 시민들조차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수질보호 관련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기존정책을 변경함으로써 물 환경보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있어서도 환경보호라는 정책적 고려 외 경제적 고려를 그 기준에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기존 독성물질규제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2016년 21세기 화학안전법 역시 구체적 이행에 있어서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동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환경규제완화 정책을 분야별로 간략히 검토하여 미국 환경법의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면교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동 논문은 본인이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행하는 최신외국법제에 게재한 원고를 수정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미국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은 규제 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분야로서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및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기존 법제의 구체적 이행 사항을 변경하여 환경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버드 및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의 공동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방 차원의 환경법제 중 49개의 법령이 과거의 규제수준으로 퇴보하였고 34건은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¹⁾

대표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하여 오바마 정부의 기후실행계획(Climate Action Plan) 및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 등의 기후변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정부가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발전을 강조한데 반해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통해 밝힌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기본 기조는 청정에너지 개발이 아닌 기존 화석연료 사용유지에 방점이 있다.²⁾ 기후변화 외에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기존 정책을 변경한 또는 변경 중인 내용으로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연방관할권 확대 재고,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그리고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지정 시 경제적 고려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화학물질 관련 법제의 경우 오바마 정부 당시 제정된 법률에서 후속 조치의 시기를 명문화하여 법률 개정 전에는 정책 변경이 어려워 트럼프 정부에서도 시행령 등을 통해 일정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나 그 규제의 예봉이 무디어지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변경된 환경 법제를 기존 정부 정책보다 후퇴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1) <<https://eelp.law.harvard.edu/2018/07/tracking-the-trackers/>> 19.10.12 최종방문.

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unleashes-american-energy-potential/>> 19.10.12 최종방문.

II. 기후변화 관련 법제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장 변화가 큰 환경정책은 기후변화정책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기후변화협약 관련 파리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여 오던 기후변화 정책을 폐기 또는 대폭 수정할 것을 공약하였다.³⁾ 취임 이후 실제로 트럼프는 경제성장 및 규제완화를 이유로 기존의 기후변화 정책을 대부분 폐기하였다.⁴⁾ 대표적인 예로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8월 21일 적정청정에너지규정(Affordable Clean Energy Rule)을 제정하여 2019년 6월 19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기존 석탄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주 정부의 계획수립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⁵⁾

적정청정에너지규정은 기존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최적배출량감축체제의 개념을 발전소 현장 내 열소비율의 효율성 개선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⁶⁾ 이러한 개념은 사실상 발전소 내에만 적용되고 발전소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있어 결국 발전소 운영의 최적의 생산성 개선에 불과하다. 이는 온실가스감축에 실질적으로 공헌 할 수 없어 환경단체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산업계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업계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동 규정은 기존 발전소에서 에너지효율성 개선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여 결국 오바마 정부 청정전력계획의 노후 화력발전소 폐기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적정청정에너지규정을 통해 기존화력발전소의 배출량개선을 통한 지속적 운영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⁷⁾

3) 2019년 11월 4일 트럼프 정부는 우려했던 것처럼 공식적인 파리협정체제에서의 서명 철회절차 진행 시작을 발표하였다. <<https://edition.cnn.com/2019/11/04/politics/trump-formal-withdrawal-paris-climate-agreement/index.html>>19.11.5 최종방문.

4) Robert V. Percival, *Environmental Law in the Trump Administration*, *Emory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Review*, vol.21, 2017, p. 230.

5) Emission Guidelin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Existing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Revisions to Emission Guideline Implementing Regulations; Revisions to New Source Review Program, 83 Fed. Reg. 44746 (Aug. 31,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08-31/2018-18755>> 19.10.12 최종방문.

6) Id.

7) Melissa Powers, *The End of Coal in the United States?*,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2018,

새로운 규정은 각 주가 달성하여야 할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고 감축량 설정은 주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주 및 하와이 주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몇 개 주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주들이 주 내 산업계의 입김에 휘둘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 규정은 또한 기존 허가 받은 오염배출시설이 추가로 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을 변경하였다. 기존의 규정이 시설 추가로 인해 전체 시설의 연간배출량이 증가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달리 신 규정은 시간당 배출량이 심각히 증가하는 경우에만 신규 시설 추가 시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시 기술적 운영을 통해 신규시설 추가 시 허가과정 생략을 가능하도록 하였다.⁸⁾

이외에도 환경청은 신규오염배출시설 중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⁹⁾과 석유 및 가스 생산 시설의 메탄가스 등의 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각각 발표하였다.¹⁰⁾ 이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 대신 청정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화석연료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의 회귀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제정하도록 하는 의무기한을 기존 2017년 5월 30일에서 2019년 8월 29일로 연장하여 오바마 정부에 시작한 온실가스정책을 지연시키고 있다.¹¹⁾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도

71면; 기존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박시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환경법연구, 제37권 1호, 2015. 207면.

8) Id.

9) Review of Standards of Performance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New, Modified, and Reconstructed Stationary Sources: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 83 Fed. Reg. 65424 (December 20,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12-20/2018-27052>> 19.10.12 최종방문.

10) Oil and Natural Gas Sector: Emission Standards for New, Reconstructed, and Modified Sources Reconsideration, 83 Fed. Reg. 52056 (Oct. 15, 201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8-10-15/pdf/2018-20961.pdf>> 19.10.12 최종방문.

11) Subpart Ba Requirements in Emission Guidelines for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s, 83 Fed. Reg. 54527 (Oct. 30, 201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8-10-30/pdf/2018-23700.pdf>> 19.10.12 최종방문.

수정 폐기되고 있는데 우선 환경청과 국가고속도로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2021년에서 2026년 사이에 제조되는 경량자동차에 적용되는 온실가스배출 및 연료효율성기준을 완화하고 오바마 정부 시기 만들어진 중간점검 등을 폐지하였다.¹²⁾ 또한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속도로 건설 시 해당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하였다.¹³⁾ 그리고 환경청이 격년으로 발령하는 2019-2020년 재생에너지 자동차 연료의 기준을 수정하여 기존 친환경 바이오 매스 디젤 연료를 강화하는 정책 역시 수정 변경하였다.¹⁴⁾ 이는 단순히 온실가스배출 외에도 대기오염에도 관련이 있어 많은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전통적으로 연방정부 보다 더욱 엄격한 환경기준을 채택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전체에 친환경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정부는 캘리포니아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관련 연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주의 권한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¹⁵⁾ 실제 법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연방과 주정부 간의 권한 쟁의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¹²⁾ The Safer Affordable Fuel-Efficient (SAFE) Vehicles Rule for Model Years 2021-2026 Passenger Cars and Light Trucks, 83 Fed. Reg. 42986 (August 24,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08-24/2018-16820>> 19.7.12 최종방문.

¹³⁾ N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Measures; Assessing Performance of the National Highway System, Freight Movement on the Interstate System, and 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83 Fed. Reg. 24920 (May 31,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05-31/2018-11652>> 19.10.12 최종방문.

¹⁴⁾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Standards for 2019 and Biomass-Based Diesel Volume for 2020, 83 Fed. Reg. 32024 (Jul. 10, 201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18-07-10/2018-14448>> 19.10.12 최종방문.

¹⁵⁾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8_0000772676&cID=10101&pID=10100> 19.10.12 최종방문.

Ⅲ. 화학물질 관련 법제

미국 화학물질 관련 주요 법률은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이다. 1976년 제정된 동 법의 기본 틀은 법 제정 이후 개발되어 시장에 진입한 화학물질을 연방환경청에서 평가하고 독성물질규제법 목록(TSCA Inventory)에 추가하여 관리하며 해당 목록에 있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다. 입법 초기부터 TSCA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1976년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위해성 평가 없이 목록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진입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역시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환경청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당수의 많은 신규 화학물질이 엄격한 위해성 평가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화학물질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신규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존 물질 역시 위해성평가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연방의회에서도 수차례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1976년 TSCA의 기본 틀은 40여 년간 지속되었다.

2016년 6월 오바마 정부에서 프랭크 루텐버그(Frank R. Lautenberg)의원이 발의한 21세기 화학안전법(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소위 루텐버그 법안이 통과되어 기존 독성물질관리법 체제에 획기적인 수정이 있었다.¹⁶⁾ 동 법의 핵심은 기존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환경청의 위해성평가 규제가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을 경제적 편익 분석을 제외하고 오로지 화학물질로 인한 보건 안전 기준만을 고려사항으로 한 것이다.¹⁷⁾ 또한 기존 TSCA법이 제조기업이 신규 화학물질 제조 이전에 EPA에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를 하고, 이후 90일 내로 EPA가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일 EPA가 90일 내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제조기업은 해당 물질을 임의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었으나 동 법안은 EPA가 신규 화학물질이 ‘ 지나친 위험성’(unreasonable risk)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야만 시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

16) 김성배, 최근 미국 TSCA의 개정과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2016, 66-67면.

17) 15 USCA §2605.

여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의무적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게 되었다.¹⁸⁾

21세기 화학안전법은 위해성평가에서 제외되었던 기존 화학물질 역시 위해성 평가의 대상으로 하되 모든 기존 물질을 평가하는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위험성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그 위험성에 따라 위험 대상인 고우선순위 화학물질(High Priority Chemical)과 그렇지 않은 화학물질(Low Priority Chemical)로 분류하고, 고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환경청은 법 제정 3년 6개월 내로 20개의 고우선 순위 화학물질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상시적으로 20개의 고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¹⁹⁾ 이에 따라 환경청은 2019년 하반기까지 고우선순위 화학물질을 지정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현재 환경청은 20여개의 고우선순위 대상 화학물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된 고우선순위 화학물질 대상 목록에는 7종의 염화솔벤트(Seven chlorinated solvents), 6종의 프탈레이트(phthalates), 4종의 내연제성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방향성 첨가제(A fragrance additive) 그리고 고분자 종합 전구성 화학물질(A polymer pre-cursor) 등 총 20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²⁰⁾ 또한 환경청은 20여개의 Low Priority Chemical 역시 2019년 말 지정을 목표로 지정을 위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말 이들 화학물질 지정이 발표되면 2020년 이후 이들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청은 2018년 9월 27일 독성물질규제법 관련 수수료 규정(Fees for Administration of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을 발표하고 동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내용은 독성물질규제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화학물질 수입, 제조 및 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²¹⁾ 구체적으로는 독성물질규제법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18) 15 USCA §2604.

19) 15 USCA §2605.

20)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list-chemicals-undergoing-prioritization>> 19.7.12 최종방문

21) 40 CFR 700.

정보제출의무대상자, 제5조에 따른 제4조의 정보제출의무 예외를 신청하는 자, 제6조의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제조사 등에게 제공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예외 사유를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위해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화학물질 관련 2016년 개정된 사항 중 상당 부분은 법률로 규정되어 법 개정 이전에는 철회가 어려워 트럼프 정부 역시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하기 어려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 분야는 타 환경법 분야와 달리 꾸준한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고우선순위 화학물질 지정에 드라이 크리닝에 사용되는 솔벤트나 페인트 제거용 화학물질 등이 초기와 달리 업계의 로비에 의해 삭제된 것은 앞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오바마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 환경청에서 화학물질 관련 부서의 총책임자(Nancy B. Beck)가 화학물질 산업계의 대표적인 로비단체인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의 상임이사였다는 점에서 그 우려는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화학물질 규제 관련 퇴행적인 정책의 예로서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솔벤트 규제를 들 수 있다. TCE는 암 유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으로 의심되어 오랫동안 규제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오바마 정부는 2016년 12월 16일 산업용 TCE 규제를 위해 독성물질규제법 제6조를 시행하는 두 규칙을 입안하였다.²²⁾ 동 규칙에 따르면 첫째, 분무형 또는 증기탈지제(aerosol degreasing, vapor degreasing), 세탁시설의 얼룩제거제(spot cleaning)에 사용되는 TCE의 제조, 수입, 처리, 유통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둘째 수입업자를 포함하여 제조업자, 처리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공급망 또는 판매망을 통해 해당 금지사항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이들의 거래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하도록 하였다. 해당 규칙들은 2017년 3월과 5월 공공 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발효 조치가 예정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시작과 함께 두 규칙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TCE 규제는 정지 상태로 간주된다.

²²⁾ 81 CFR 91592.

IV. 기타 법제

1. 물 관련 법제

물 관련 미국 연방법인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은 미국 수계에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지표수의 수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 수계란 기본적으로 주와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상업에 사용되는 항행 가능한 수계(navigable water)를 의미한다.²³⁾ 따라서 기본적으로 청정수법은 관할권이 제한되며 작은 수로 및 간헐적 하천과 습지 등의 경우 대부분 주의 관할권에 속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의 오염행위가 주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규제되지 않자 오바마 정부는 2015년 미국수로규정(Waters of the United States: WOTUS rule)를 제정하여 연방법 적용을 확대하였다. 2015년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항행 가능한 수로와 수리학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명백히 연결된 작은 수로 또는 습지의 경우도 연방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농업 및 석유업계의 반발 속에 법원에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관련 산업계의 요청과 2015년 규정이 산업계의 새로운 규제라고 간주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2015년 규정의 미국 수계 개념의 개정을 지시하였고 2018년 12월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법의 확대적용을 막고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항행 가능한 수로와 수리학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작은 수로와 습지 그리고 간헐적 하천이 아닌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만이 연방의 관할 대상으로 하였다.²⁵⁾ 이로 인해 연방 청정수법의 확대적용을 통해 주정부의 수질오염규제를 보완하려고 하였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폐기되었다.

2. 멸종위기종보호 관련 법제

²³⁾ 40 CFR 230.3(s)

²⁴⁾ <https://archive.epa.gov/epa/sites/production/files/2015-05/documents/fact_sheet_summary_final_1.pdf> 19.10.12 최종방문.

²⁵⁾ <<https://www.epa.gov/wotus-rule/revised-definition-waters-united-states-proposed-rule>> 19.10.12 최종방문.

2018년 7월 미 연방 어류 및 야생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FWS)과 국가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산하 국가해양어류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은 공동으로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ESA)의 이행규정 수정안을 제안하였는데 수정안은 현재 공공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이상 2019년 하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멸종위기종보호법 제4조 상의 멸종위기종 지정 및 변경 그리고 중요서식지 지정 절차에 관한 변경사항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멸종위기종 지정 및 주요 서식지 지정 과정에 있어서 해당 지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및 기타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²⁶⁾ 이는 결국 멸종위기 보호대상 종의 지정 및 해당 종이 서식하는 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 지정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멸종위기종보호법은 그 동안 광업, 석유 및 가스 추출 산업, 목재 회사 및 목축업과는 대척점에 있었다. 산림지역이나 야생지역이 주 산업지인 이들 산업계는 해당 산업계의 개발행위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개발이 제한되고 나아가 사업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정부가 요구할 수 있어 경영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트럼프 정부는 선거기간 중에 이들 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하여 이들 산업계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개정안은 해당 공약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주요 평가이다.

3.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제

또 다른 환경 규제 완화 시도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검토기간을 단축하여 주요 인프라 사업의 허가를 2년 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²⁶⁾ EPA, Endangered Species Act Proposed Revisions to the Regulations, 2018. <https://www.fws.gov/endangered/improving_ESA/2018-Proposed-Regulation-Revisions-Sec%204-and-7-web.pdf> 19.10.12 최종방문

것이다. 이를 위해 미 연방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환경청)과 연방정부 12개 기관 상호간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 중이다.²⁷⁾ 미국 연방 환경법제의 핵심인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제102조는 보건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실시 주체는 관련 연방 기관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환경법의 기본 원칙인 사전예방원칙을 보장하는 핵심제도이다. 아직 양해각서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체결되는 경우 12개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부절차를 개정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말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만일 해당 절차가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사전예방원칙의 핵심적 법제라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떠한 환경법 규제 완화보다 중차대한 일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연방 환경법제는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의 폐기 및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의 환영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 속에 이러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변경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 행정 명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관련 법제에서는 2016년 21세기 화학안전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그 후속조치의 시한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없는 한 화학물질 규제라는 큰 틀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검토한 많은 부분들이 국내 환경 법제에는 시사점 보다는 반면교사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단지 화학물질 관련 화학물질 제조, 수입, 유통, 처리업자에

27)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executive-order-establishing-discipline-accountability-environmental-review-permitting-process-infrastructure/>> 19.7.12 최종방문

계 통계조사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도 시사점이 있다. 특히 미국에는 활성화되어있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화학물질 정보의 원칙적 공개 및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절차가 새로 시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이기는 하지만 많은 화학 관련 업체가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현행 제도와 달리 신청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의 경감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의 환경정책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등과 같은 일정 주는 친환경적 정책을 고수 또는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 연료의 사용 대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일자리에 연동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28)일리노이 주의 2016년 미래에너지 일자리법(Future Energy Job Act)을 필두로 2019년 메릴랜드 주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법(Clean Energy Jobs Act)의 주 의회 통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 등은 새로운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논문투고일 : 2019. 11. 10. 심사일 : 2019. 11. 20. 게재확정일 : 2019. 11. 22.

28) 김두수, 김민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41권 1호, 2019. 121면.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성배, “최근 미국 TSCA의 개정과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2016.
 최지현, “미국 셰일가스 개발 및 수출 규제에 대한 소고 : 환경 규제 관련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2017.

김승완, 박시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미국 뉴욕
 州 REV 개혁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40권 제2호, 2018.

김두수, 김민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본 우리
 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41권 1호,
 2019.

박시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환경법연구』, 제37권 1호,
 2015.

Melissa, The End of Coal in the United States?,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2018.

2. 외국문헌

Robert V. Percival, “Environmental Law in the Trump Administration”, *Emory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Review*, vol.4, 2017.

Carol J. Miller, For a Lump of Coal & a Drop of Oil: An Environmentalist’s
 Critiqu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First Year of Energy Policies,
Virginia Environmental Law Journal, vol. 36, 2018.

【Abstract】

**Recent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in the US**

Byungchun So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The election of Donald J. Trump to be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nderstandably horrified environmentalists. During his campaign for the presidency, Trump vowed to not sign the Paris Agreement and abolish administrative regulation regar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fter his auguration, major environmental policy regarding climate and energy field had dramatically changed. He called for the EPA. to dismantle the Clean Power Plan in 2017. The planned substitute, the Affordable Clean Energy Rule, is the administration's most sweeping plan to extend the lives of coal-burning plants and shore up the mining industry an industry more threatened by economic change than regulation. Moreover, Obama government policy on clean water protection was repealed by the new water rule which shrink the federal jurisdiction on the navigable waters. EPA also tries to making regulations and executive order in order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which passed right in Obama government in favor for the chemical industry.

<p>주 제 어 미국 환경법, 트럼프정부, 기후변화, 21세기 화학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Key Words The US Environmental Law, Trump Government, Climate Change,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EIA</p>
--